

의안번호	제 32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1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박병천·김현문·이정범
박용규·박재주·유상용
이욱희 의원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근거 조항 추가(안 제1조)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 변경(안 제2조제1항)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1) 위원회 명칭 변경(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구체화(안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당연직 위원을 직책으로 명시
- 3)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상위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6조)
- 바. 적극행정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2)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 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근거 조항 마련(안 제10조)
- 아. 교육공무원 조례 적용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1조)
- 자. 종전의 조례에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 1)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
 - 2)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예산과장, 노사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표창 등)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9108호, 2022.12.27., 일부개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 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9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27.]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7.]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8호, 2022.12.27., 일부개정]

-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 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 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8. 25.]

□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338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 2. 29., 1991. 2. 1., 1991. 4. 23., 1991. 8. 8., 1992. 8. 25., 1994. 2. 17., 1995. 5. 29., 1996. 2. 22.,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7. 6. 28., 2008. 2. 29., 2008. 8. 27., 2011. 10. 25., 2012. 12. 4., 2013. 3. 23., 2023. 4. 11.>

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1999. 9. 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